

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규정

제 정 : 2020. 2. 17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34조 3항에 의한 학점취득을 위한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특별학점은 정규 교과목 이외에 특별과정, 어학시험 등 정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고도 특별히 인정되는 학점을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특별과정은 본부 또는 본 대학 센터와의 협의에 의하여 특별히 개설된 과정에 한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공인된 어학시험은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학점 관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지원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교학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.
-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재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점인정 교과목 지정에 관한 사항
2. 기타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세부시행 사항

제5조(학점인정 및 성적) ① 특별학점의 학점인정은 [별표1]과 같다.

- ② 특별학점은 학기별 이수학점 범위에 포함하며, 재학 중 총 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
- ③ 특별학점 취득에 의한 성적은 당해 P/N로 부여한다.

제6조(특별학점인정 및 신청 시기) ① 특별학점 신청은 매학기 개강부터 종강 전까지로 하며 신청과목은 해당학기 개설된 과목 또는 공인어학 성적표로 한다.

- ② 특별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기 성적처리 일정에 준한다.

부 칙

1. 이 제정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구분	기준	학점
특별과정 & 공인어학능력시험	비교과프로그램 Gate R 이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어학성적을 제출한 자	1학점
	비교과프로그램 Gate S 이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어학성적을 제출한 자	1학점
	비교과프로그램 Gate G 이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어학성적을 제출한 자	1학점
	비교과프로그램 Diamond Class(심화단계) 이수자	1학점